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종성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9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3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3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내용 반영
 - '자활공동체'를 '자활기업'으로 변경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

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

-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(2012.2.1.) 내용에 따라 변경된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[붙임] 기금운용현황

자활기금 조성 현황

(단위 :천원)

2012년말 현재액	2013년도 조성계획			2013년말 현재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1,885,802	98,240	377,000	△278,760	1,607,042	

<자금수지 총괄>

(단위: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전년도 수입액	수입액	증 감	항 목	전년도 지출액	지출액	증 감
합 계	787,570	577,233	△210,337	합 계	787,570	577,233	△210,337
출연금				고유목적 사업비	185,000	77,000	△108,000
보조금				융자금	300,000	300,000	
차입금				인력운영 비			
융자금회수 (이지포함)	35,000	35,190	190	기본경비			
예탁금상 환금	468,590	268,961	△199,629	예탁금			
예치금회 수	209,261	210,032	771	예치금	302,570	200,233	△102,337
예수금				차입원리 금상환			
이자수입	74,719	63,050	△11,669	예수금원 리금상환			
기타수입				기타지출			